

올해부터 적용되는

LPG시설 검사기준

1. 전기설비의 방폭성능

□ 적용대상

- 충전 · 저장 · 집단공급 · 판매 및 영업소시설, 저장탱크가 설치된 특정사용시설

□ 관련근거 및 내용

○ 관련근거

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2장 제2절 제3관
(전기설비의 방폭성능기준) 제2-2-14조 제13항

○ 내용

1994.7.1. 이전에 전기설비 설치에 관한기술검토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하여 설치한 전기설비 중 방폭성능이 상실된 전기설비는 1999.12.31까지 방폭성능을 갖추어야 함

□ 2000.1.1부터 적용할 사항

- 방폭성능이 상실된 전기설비는 검사 불합격 처리
- 기존 시설의 방폭성능 상실여부 판단기준
제작사에서 방폭구조임을 전기설비의 명판 · 사양서 등에

한국가스안전공사 본사가 LPG 시설검사시 올해부터 적용되는 기준들을 각 지역본부로 통보한 내용을 게재한다.

표시(예:d₂G₄)한 제품이고, 액법고시 제2-2-12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토록 설치한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나, 방폭구조 표시가 없거나 액법고시 제2-2-12조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음
※기화장치중 성능검정을 받은 전기설비의 부분교체 가능

2. 안전관리규정 확인 · 평가

▣ 적용대상

- 충전 · 저장 · 집단공급 · 판매시설 및 가스용품제조시설

▣ 관련근거 및 내용

○ 관련근거

-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 규칙 제17조 (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 · 평가)
- 엘피 620-3118호 ('99.7.19: 액법 안전관리규정 확인 · 평가 시기 변경 통보)

○ 내용

- 액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거 충전 · 저장 · 집단공급 ·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하는 때에 같이 실시하도록 규정
- 99-30차 기술협의회 결과 사업자의 안전관리규정 변경으로 인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안전관리규정 확인 · 평가 업무는 '2000.1.1이후부터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는 때에 병행실시키로 변경

▣ '2000.1.1부터 적용할 사항

- 정기 또는 수시검사시 안전관리규정 확인 · 평가 병행실시

※ 가스용품제조시설에 대해서는 가스용품처의 지침, 지시에 따를 것

3. 고압가스 전용 운반차량

1) 고시개정 내용 요약

▣ 관련근거 및 내용

○ 관련근거

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9-3-2조 제3항 제4호 (2) 및 제9-3-6조

○ 내용

- 충전용기는 적재함의 구조가 제9-3-2조 제3항 제4호 (1)에 적합한 가스운반전용 차량에 의하여 적재 · 운반 및 하역을 할 것. 다만, 다음의 (가) 또는 (나)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적재함에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.

(가) 가스를 공급받는 업소의 용기보관실 바닥이 운반차량 중 적재함 최저높이로 설치되어 있거나, 컨베이어벨트 등 상 · 하차 설비가 설치된 업소에 가스를 공급하는 차량

(나) 적재능력 1톤 이하의 차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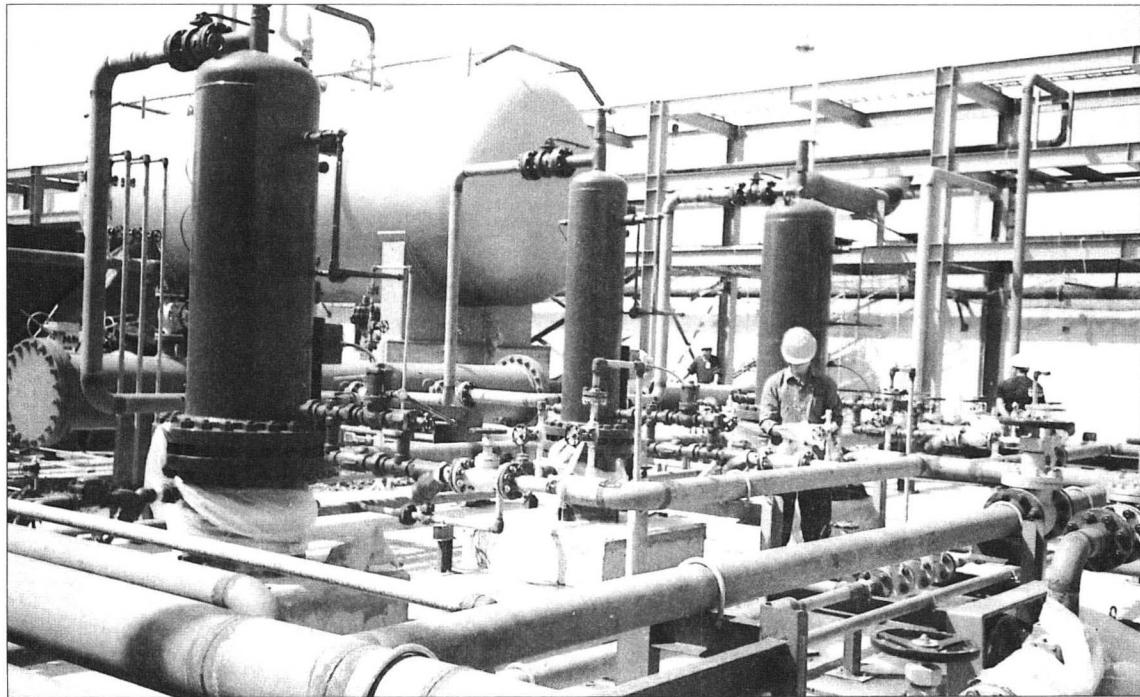
- 제9-3-2조 제3항 제4호 (1)의 규정 중 적재함 보강에 관한 규정은 2000년 1월1일 이전에 등록된 적재능력 1톤 이하의 차량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○ 시행일: 공포일로부터 시행 (공포일: 2000. 1. 3)

2) 업무처리 방법

▣ 완성 · 정기검사시 개정기준 적용

○ 시설검사시 법규상의 기술기준이나 시설기준에 가스전용운반차량을 확보토록 되어 있고 검사기준상의 검사항목에 동 기준이 포



함된 시설에 대하여는 개정기준을 적용하여
검사처리

- 1톤 이하 차량의 경우 차량 등록증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재함 보강 대상 적용
- 신고서 제도 및 각종 점검시에도 개정된 기준 적용

4. 저장탱크의 내진 설계

□ 적용대상

- 3톤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, 지지구조물 및 기초와 이것들의 연결부에 대하여 적용

□ 관련근거 및 내용

- 관련근거
 -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3 제1호 가목(6)(라)
 -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

2장 제3절 제10관 액화석유가스설비의
내진설계기준

○ 내용

- 2000.1.1이후 허가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3톤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, 지지구조물 및 기초와 이것들의 연결부에 대하여 내진관련 고시 적용
- 특정사용시설의 경우도 2000.1.1이전에 사용신고를 하였거나 설치된 시설은 내진설계기준을 적용치 아니하며, 2000. 1.1 이후 설치되는 시설부터 적용

□ 2000.1.1부터 적용할 사항

- 3톤이상의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
 - 허가시설은 2000.1.1이후 허가시설부터 내진설계기준 적용
 - 특정사용시설은 2000.1.1이후 실시하는 중간검사부터 적용